

6. 建設工事의 下都給代金 支給保證制度 施行

資料提供：行政碎身委員會 行政室

□ 행정쇄신위원회는 '95. 9. 15 본회의를 개최하여 건설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, 원도급업자는 건설공제조합등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의결하고 이를 대통령께 건의키로 함.

□ 이는 현행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영세한 하도급업자가 하청공사를 하고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, 도산 및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.

□ 다음,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를 면제토록 함.

- 건설업법령이 정하는 수급인의 하도급계열화실적 및 재무구조가 양호하다고 평가 받은 경우로서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간에 상호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
- 원도급업자가 하도급한 공사금액이 건설업법령이 정하는 금액(예 : 3천만원)이하로서 원도급업자의 하도급업자간에 상호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
-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업법이 정하는 경우

□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가 면제된 건설공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치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함.

□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은 하도급계약상 공사기간과 기성금 지급주기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증토록 함.

- 공사기간이 4월이하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금액에서 계약상 선금금을 제외한 금액
-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 주기가 2월이내이면 「(하도급계약

금액 - 계약상 선급금) ÷ 공사기간인 월수」에 4를 곱한 금액

-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 주기가 3월이상이면 「(하도급계약
금액 - 계약상 선급금) ÷ 공사기관인 월수」에 기성금 지급 주기인 월수의 배수를 곱한
금액

□ 이에 대응하여 하도급업자는 하도급계약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의무
화함.

장인혼을 현장에 한국혼을 세계에